#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준법경영 브리프스

<8월>

여름 특별호

### COVER STORY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른지 20여년이 지 났음에도 여전히 뇌물, 청탁, 회계부정 등 부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을 할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자율적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보급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유엔반부패협약, 미 해외부패방지법(FCPA)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한 기업경영을 꾀하는 한편,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호에서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패행위 및 비리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준법경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여름 특별호 명사칼럼 4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은 청렴 선진국의 지름길  |   |
|--|---|
| 2. CP노트 7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2) 국내 기업(글로벌 기업 자회사 포함)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 |   |
| 3. STEP BY STEP 12   이해관계자별 실천프로그램   협력사   | 2 |
| 4. 윤리 한 스푼   | 7 |
| 5. <b>공감+</b>  | 7 |
| 6. <b>뉴스클립 18</b><br>국내외 윤리/인권/반부패 동향  | 8 |
| 7. 문화 속 기업윤리   | 0 |
| 8. 행사소식 22   | 2 |
| 9. 퀴즈 24   | 4 |

### 여름 특별호 명사 칼럼

#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은 청렴 선진국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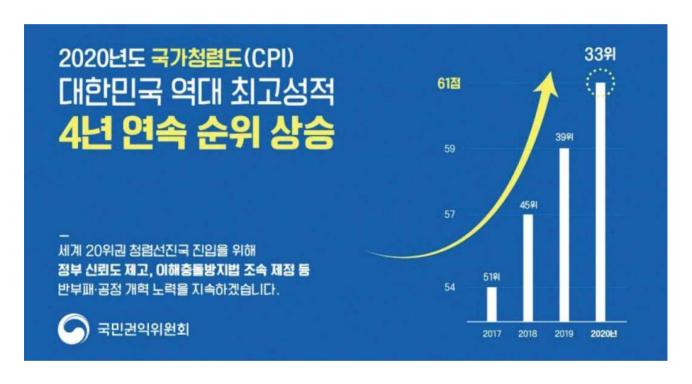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우리나라는 약 1조 달러의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는 경제선진 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지난달 2일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 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 기업의 피땀흘린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 져가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기업도 선진국 지위에 걸맞는 책임경영을 실천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렴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2020년도 국가청렴도(CPI)는 181개국 중 33위, 61점<sup>1)</sup>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간부문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답보<sup>2)</sup>상태에 있습니다.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ESG 경영<sup>3)</sup>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존의 문제로 보고 앞 다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를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회계부정, 주가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부패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를 넘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등 국제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up>1)</sup> 우리나라 CPI 추이 : '16년 52위(53점)→ '17년 51위(54점)→ '18년 45위(57점)→ '19년 39위(59점)→ '20년 33위(61점)

<sup>2)</sup> IHS Markit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위험지수' 조사결과 '경영활동 관련 부패'는 2017~2020년 연속 59점 수준이며, EIU의 '국가위험평가' 조사결과, '공적자금 유용 및 계약 등 뇌물관행' 2017~2020년 연속 55점 수준

<sup>3)</sup> 기업 경영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는 경영철학

글로벌 투자사인 RBC 자산운용사 및 Funds Europe이 지난 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ESG 평가요소 중 '반부패'를 가장 큰 고려요소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연구('17년)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실질 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준법경영은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무역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자율적 실천을 바탕으로 부패위험 관리와 위법행위 예방 등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ESG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미래, 나아가 국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윤리준법경영'의 해외 현황과 미 FCPA법 위반 사례, 국내기업의 대응 현황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CP노트

#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부패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법으로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꼽을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400여 개의 미국 기업이외국 공무원에게 3억불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법으로 1977년 12월 제정되었고, 1988년, 1998년 등 개정을 통해 제정 당시보다 제재 대상 및 관할이대폭 확대되었다. 법 집행에 있어서도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FCPA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을 위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방지 규정(the anti-bribery provisions)과 장부 조작 등을 금지하는 회계 규정(the accounting provision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시에는 벌금, 구금, 이익환수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미국 양형기준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 CP)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기소 이외의 방안으로 벌금 부과 등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 미국 연방양형기준 §8B2.1. 효과적인 CP의 요건>

- 범죄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준·절차 확립
- 이사회의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고위직) 관리자(실무자) 임명
- 불법행위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자의 중요보직 임명 배제
- 임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
- 컴플라이언스 준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

법 위반 시 미국 법원은 기소·금전적 제재 외에도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법원에서 CP 관련된 보호관찰(probation)처분을 할 경우, 법원은 기업이 수용하기로 합의한 내부통제체계의 도입과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를 보호관찰관으로 임명하고, 각 기업은 CP 운영상황을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며, 보호관찰관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운영 현황을 평가 가 감독하게 된다.

#### < 참조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18.12)

# 2. 국내 기업(글로벌 기업 자회사 포함)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

지난 7월 2일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는 195개 회원국 중처음으로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지위가 변경되며 명실공히 '선진국'에 속하게 되었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또한 활발하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KT, 포스코,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 금융지주,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대상국가 법률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례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기업 사례 1

2007년 미국의 석유 시추선사인 '프라이드'(현재 밸라리스)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 수 주 과정 참여한 A기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인과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A기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브라질 공무원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미 법무부는 A기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패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참작하여 2019. 11. 22. 벌금 7500만 달러(약 900억 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에 합의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실시 성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며,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해당 사건은 기소 없이 종결된다. 한편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는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 조사 종료의 대가로 8억 5천 300만 달러(약 9천 500억 원)를 내기로 합의 하였다.

#### ▲ 기업 사례 2

1998년부터 2003년까지 B기업의 직원들은 입찰정보의 부정한 취득을 위해 16개 한국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들에게 합계 20만 7,157달러의 현금과 유흥, 여행, 선물 등의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5,200만 달러 이상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B기업은 총 1천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 기업 사례 3

C기업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0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국영 제철 회사의

임직원에게 총 20만 5천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뇌물공여행위로 총 626만 달러 수준의 순이익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뇌물 및 부적절한 지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회계장부에 '판매수수료(commission)', '환불(refunds)', '환급(rebates)' 등으로 허위기 재하였다.

미국 법무부의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C기업은 750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납부하기로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하였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약 773만 달러의 제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3년간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 활동시키도록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하였다.

< 참고 : 미 해외부패방지법(FCPA법) 위반 TOP10 >

| 순위 | 국가별          | 기업명                                | 벌금.이익환수금       | 년도   |
|----|--------------|------------------------------------|----------------|------|
| 1  | 미국           | Goldman Sachs Group<br>Inc.        | \$3.3 billion  | 2020 |
| 2  | 네덜란드/프랑<br>스 | Airbus SE                          | \$2.09 billion | 2020 |
| 3  | 브라질          | Petroleo Brasileiro S.A.           | \$1.78 billion | 2018 |
| 4  | 스웨덴          | Telefonaktiebolaget LM<br>Ericsson | \$1.06 billion | 2019 |
| 5  | 스웨덴          | Telia Company AB                   | \$1.01 billion | 2017 |
| 6  | 러시아          | MTS                                | \$850 million  | 2019 |
| 7  | 독일           | Siemens                            | \$800 million  | 2008 |
| 8  | 네덜란드         | VimpelCom                          | \$795 million  | 2016 |
| 9  | 프랑스          | Alstom                             | \$772 million  | 2014 |
| 10 | 프랑스          | Soclete Generale S.A               | \$ 585 million | 2018 |

<출처 : FCPA 블로그>

#### STEP BY STEP

#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가이드 이해관계자별 실천프로그램 | 협력사

기업의 협력사 및 사업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며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Q. 협력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좋을까요?

'상생경영'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최근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상이 협력사입니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계약 및 거래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프로그램, 의견수렴 채널 구축 및 부패방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1. 계약 및 거래시스템 구축

협력사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와 규제당국의 각종 정책 및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규 준수는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협력사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인터 넷 입찰 방식이나 전자거래 제도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 ✔ CP 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CP 운영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
  - ✓ 업무추진 시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관련 위반소지를 사전에 점검, 위법행 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내부감독 체계 구축

### 2. 윤리준법경영 공동추진

협력사 심사 항목에 윤리경영 요소를 포함하고 우수실천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협력사에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 협력사 선정 시 임직원 존중, 사회적, 환경적 성과 등 윤리준법경영 요소 고려
- ◆ 협력사 적격심사 시 윤리준법경영 위반사례 있을 경우 불이익 부과

### 3.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

협력사에 일방적인 지시와 의견 제시가 아닌 협력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합니다.

- ◆ 온라인 의견전달 창구 마련, 협력사 만족도조사(익명보장), 불공정거래 신고제 도 시행 등
- ◆ 정례적 회의 진행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 불만 청취 및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개선 등 협력사와 쌍방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4. 부패방지 정책 수립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와 명확하고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협력사와 발주,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함께 위반 시 제재를 감수한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 예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 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5. 공정거래 운영 체계 수립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운영 체계를 수립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합니다.

- 가격책정, 허가, 판매권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공정성 확보 및 유지
- 협력사에 대한 적정한 비용 및 이익보장, 대금결제 및 지불방식 개선 등

#### 6.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의 임직원 역량강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제품 교육, 환경 교육, 안전보건 교육, 경영관련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 기술지원: 자원이 부족한 협력사에 R&D 문제 해결 및 기술력 향상 위한 기술 지원

#### 7. 기타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와 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성과공유제 실시: 모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한 후 그 성과를 공유
- 우수협력사 지원: 우수협력사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예: 포상금 지급, 금리우 대 금융지원, 판로확대 지원, 우수협력사 직원 휴가비 지원, 우수협력사 인재양 성 지원 등)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 상생경영을 위한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지원 등

#### [Tip] 제3자 리스크 관리

'제3자 리스크'란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적 요인(조직)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때 '제3자'란 한 기업이 계약 유무를 막론하고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 부품업체, 용역업체, 유통업체, 중개업체, 대행업체 등이 포함되며 때로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O 제3자 리스크 관리 유형



### O 리스크관리 절차

• 1단계(리스크 식별): 제3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을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예를 들어, 기업과 관련된 제3자의 사업규모, 복잡성, 업종, 지역 등에 대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함

- 2단계(리스크 평가): 국가별 부패 위험성 차이, 업종별 거래 위험성 차이, 과거 규제 위반 이력,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 등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며, 핵심 리스크 지표(KRI\_Key Risk Indicator)를 설정하여 평가함
- 3단계(리스크 대응): 낮은 리스크의 제3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인터넷 검색과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높은 리스크의 제3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데이터 수집과 조사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함
- 4단계(리스크 모니터링): 제3자와 처음 관계를 맺을 때 리스크 식별과 평가 절 차를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행·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협력사를 사업파트너로 인식하여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제3자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서 기업이 안전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윤리준법교육 프로그램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기업 윤리경영 모델(국민권익위원회)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전국경제인연합) E&C 뉴스레터(주식회사 이노크루) 신한금융지주 http://www.shinhangroup.com/kr/etc/ethics03.jsp 롯데푸드 http://www.lottefoods.co.kr/company/management 한전KPS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2

### 윤리 한 스푼



#### 공감+



#### 뉴스 클립

# 국내 동향

#### 1. 개도국 57년 만에 한국 '선진국'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특정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설립 57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한국의 합류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으로 구성돼 있던 선진국 그룹은 32개국으로 늘었다.

\* 참고: 한국경제, 2021.07. 04.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0453421

# 2.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 2년, 사각지대 많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매일경제, 2021.07. 1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81642/

# 해외 동향

#### 1.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각서 발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을 국가 안전보장의 핵심적 이익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서(Memorandum on Establishing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a Cor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 각서)"를 발표하여, 정권 차원에서 반부패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 각서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로 인식한 것으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외 기업도 미국 반부패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패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법률저널. 2021. 6. 2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468

# 2. NASA·ESA 기후변화 대처 위해 공동 의향서에 공식 서명

지난 7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 관측과 연구, 대응책 마련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의향서에 공식 서명했다. 공동 의향서는 지구 관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지구 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관측 자료 및 정보,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자료 개방정책에서의 협력 등을 개괄하고 있다.

\* 참고: 연합뉴스. 2021. 7. 14.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080500009

#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영전략, ESG 책,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를 뜻하는 말이다. 최근, 이 개념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직원과 주주, 그리고 고객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다.

ESG에 대해 대략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실히 구분 하기란 쉽지 않다. CSR이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실현을 위한 부가활동을 통해 기업 평판

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면 ESG는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를 도입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형성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즉, '기후변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지구 생물종의 10%가 멸종위기를 겪는다고 하니, 이제 더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기업경영활동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전 세계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렇듯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세계적 추세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초점을 두면서 시장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슈머'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기업이 이들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ESG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9천억 원에서 2019년 32조 2천억 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책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에서는 수많은 ESG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기업에 적합한 ESG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트렌드를 읽고, 기업에 진짜 필요한 ESG분야를 골라낼 수 있는 시야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ESG 경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더라도 우리기업의 활동과 접점이 없다면 과감히 솎아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ESG 실천으로 발생하는 수익, 실천하지 않을 때의 손해,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명확한 수치로 가시화할 수 있어야 ESG경영이 기업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다.

ESG는 기업 전략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단기간에 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상 유지만으로 미래를 꾸릴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작하는 기업만이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 행사소식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ICSD)

지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방안을 연구 및 논의하는 제9회 ICSD 연례 국제 회의

주최 : ICSD

일시 : 2021년 9월 20일 ~ 21일

방법 : 온라인

참고: https://ic-sd.org/

#### **SDG Summit**

기업, 업계 연맹 및 EU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업계 연맹 및 EU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 채택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

주최 : CSR Europe

일시 : 2021년 10월 11일 ~ 14일

장소 : 온라인

참고 :  $\underline{\text{https://www.csreurope.org/calendar/the-european-sdg-summit-2021}}$ 

#### 독자 퀴즈

Q.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통제, 감독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용어는?

- ① 윤리경영 프로그램
- ② 사회공헌 프로그램
- ③ 기업경영 프로그램
-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 지난 호 정답: ③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주은정님, 정한진님, 안경민님, 배상운님, 석지연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유리메시지

